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극 지 활 동 진 흥 법 시 행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극지(劇地)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·지원을 통해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,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「극지활동 진흥법」이 제정(법률 제18055호, 2021. 4. 13. 공포, 2021. 10. 14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·시행계획 수립(안 제2조, 제3조)

- 1)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부처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
- 2) 세부과제의 경미한 사항 변경, 타법·타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, 단순 오류 수정 등 기본계획 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

나. 극지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·운영(안 제4조)

- 1)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한 관계 부처 협의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

- 2)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
중 극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

다.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(안 제5조)

- 1) 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, 극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, 극지
활동 기반시설 실태 등 실태조사의 범위 구체화
- 2)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, 관계기관·
단체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

라.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(안 제6조)

법 제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극지전문 인력양성의 목표, 기본방향,
프로그램 개발 등의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을 규정

마. 국제협력 촉진(안 제9조)

법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교류 및 국제 공동연구 지원,
지역별 거점 전문센터 설립 등을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

바. 안전관리(안 제10조, 제11조)

- 1)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지침의 수립, 정기 안전점검, 시설
보완 및 개·보수 요구 등 사항을 규정
- 2)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, 사고 보고 및 사후
조사 등을 규정

사. 업무위탁(안 제12조)

해양수산부장관의 전문인력양성, 국제협력, 통합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등 업무의 위탁대상 기관을 정부 출연연구기관, 한국해양과학기술원
및 부설기관,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 구체화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극지활동 진흥법」(법률 제18055호, 2021. 4. 13. 공포, 2021. 10. 14. 시행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외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1.7.5 ~ 2021.8.17) 예정

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극지활동 진흥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수립·변경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「극지활동진흥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체계, 추진일정,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
2.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
3.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
4. 그 밖에 계산 착오, 오기(誤記), 누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제3조(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 수립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을 위해 해당연도의 소관별 시행계획,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1. 소관 분야의 활동에 대한 해당 연도의 극지활동 진흥 추진 목표와 내용
2. 제1호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
3.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 등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제4조(극지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협의회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그 밖에 극지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극지활동 진흥을 위한 정책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“정책협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사람 중 극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할 수 있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극지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

제5조(실태조사 내용과 방법)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극지활동 관련 국내외 동향
2. 극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
3. 극지활동 기반시설, 연구장비 등의 확보·운영 및 개발 실태
4. 극지연구 관련 전문인력 현황 및 연구기관의 운영 실태
5. 그 밖에 극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현지조사의 방법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1. 정기조사 :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실시
2. 수시조사 :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

제6조(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다.

1.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의 목표 및 기본방향 수립
2.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3. 극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교원의 양성
4. 그 밖에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와 장비)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”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.

1. 극지 현장 활동 시 비상상황에 대비한 긴급대피시설, 응급후송상황에 대비한 비상항공등화설비 등
2. 국제조약과 정부 간 기구 활동에 근거하여 요구되는 극지과학기지 주변 환경 관측 설비 및 장비
3. 기타 시설 운영과 안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비 및 장비

제8조(극지활동 기반시설 활용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해 활용 수요조사 및 심사를 거쳐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계획을 각 시설별로 수립할 수 있다.

-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포함하는 극지활동 기반시설 공동활용위원회(이하 “공동활용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.
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활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수요조사 및

심사절차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④ 공동활용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

제9조(국제협력 촉진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단, 제4호, 제5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.

1. 극지 관련 정보 및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
2. 국제 공동조사·연구 활동
3.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
4. 국제기구·단체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
5. 국제협력을 위한 기구 및 지역별 거점 전문센터 설립·운영
6.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방법·시기·절차, 이용자 행동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지침을 작성하여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

- ② 극지활동 기반시설 관리·운영자는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지침에 따라 연 1회

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극지활동 기반시설 관리·운영자는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의 결과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기반시설 관리·운영자에게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1조(극지활동 중 사고 보고·조사) ① 극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의 장,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자 등은 극지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극지활동 기반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극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주관 연구기관의 장,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안전사고 및 중대한 결함의 내용, 응급 안전조치 사항, 그 밖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중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.

④ 해양수산부 장관은 신속한 사고 수습과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2조(업무 위탁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, 제9조, 제12조,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
2. 「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」에 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부설기관
3. 「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」에 의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0 - 6182